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이연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70
----------	------

발의연월일 : 2025. 6. 5.

발의의원 : 이연숙 의원,
박주용 의원, 김보경 의원,
신달호 의원, 최재규 의원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의회 운영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고, 의회 운영에 관해 산재한 조례·규칙을 묶어 의회 운영의 근간으로서 역할하는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기본이념·원칙·다른 조례와의 관계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장)
- 나. 의원 등록·의석배정·사직·자격심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다. 의장·부의장 선거, 임기, 직무대리 등에 관한 사항(안 제3장)
- 라. 위원회 설치·사무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장·제5장)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 나. 비용추계서 : 비대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대의기관인 달성군의회가 주민의 뜻을 받들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달성군의회 구성과 운영 등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책임 의정 구현, 열린 의정 실천, 현장 의정 강화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18조 및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은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항상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정하고 균형 있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회의 운영 원칙)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는 원칙적으로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법 제46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원의 의정활동 원칙) ① 의원은 군민의 대표로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을 통하여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여

야 하고, 의정활동 시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법 제44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의정활동 참여 보장) 의회는 군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의회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의회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의원

제7조(등록) 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석배정) ① 의회 본회의장(이하 “본회의장”이라 한다)에 의원의 의석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과 그다음 비례대표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순에 따라 임시로 배정한다.

제9조(선서)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의원 보궐선거·재선거 또는 비례대표직의 승계에 따라 해당 직위를 취득한 의원은 그 후 처음 출석하는 의회 본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에서 선서한다.

제10조(청가와 결석) ① 의원은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제2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장이 관계 수사기관장으로부터 영장의 사본과 함께 그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원의 청가(請假)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의 의결로 허가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청가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 기간 내에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 해당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은 전항들에 따른 청가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나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원 또는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11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한다.

제12조(상해 등의 보상) 법 제42조에 따라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직) ① 법 제89조에 따라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14조(자격심사의 청구) ① 의장은 의원(이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청구의원”이라 한다)으로부터 다른 의원(이하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에서 “심사대상 의원”이라 한다)의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副本)을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달하고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② 심사대상 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그 밖에 사고 때문에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자격심사에 대한 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 ① 의장이 제14조

에 따라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4조에 따른 청구서와 답변서청구서와 답변서로 심사한다. 다만, 기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에서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에게 송부한다.

제16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 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을 거쳐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청구의원과 심사대상 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대상 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의장과 부의장

제17조(의장의 직무) 법 제58조에 따라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본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 사무를 감독한다.

제18조(의장·부의장의 선거) 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전일(前日)까지 실시한다. 다만, 그날이 휴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까지 실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2차투표를 하고, 2차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⑤ 부의장 선거는 의장 선거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시행하되,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에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제19조(의장·부의장 선거에서의 후보자 등록) ①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되고자 하는 의원은 해당 선거일 5일 전부터 선거일 3일 전 18시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후보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에 서면으로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무국장은 그 신청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는 경우 즉시 이를 수리,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신청을 할 경우, 후보자를 중복하여 등록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마친 의원에 한하여 해당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지며 선거 당일 선거 전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견발표 순서는 후보자 등록순으로 한다.

④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후보자의 정견발표에 대해 다른 의원의 질의·토론 등 일체의 발언은 허용되지 않으며 후보자인 발표자는 본인의 정견 외에 다른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수 없다.

제20조(의장·부의장의 겸직 제한) 의장·부의장은 의회의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다.

제21조(의장·부의장의 임기) 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 중에 만료되고 제1항에 따른 임기만료 후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로 의회가 집회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새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하는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법 제61조에 따라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법 제59조에 따른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 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제23조(임시의장의 선거)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법 제60조에 따른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제1항에 따라 임시

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될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따른다.

제24조(의장·부의장의 사임)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4장 위원회

제25조(위원회의 설치) 의회에는 법 제64조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장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6조(사무기구의 설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제27조(의정활동 전문성 강화 지원) 의회는 법 제46조에 따라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정책개발 및 연구를 위한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2. 입법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법률고문 구성 및 운영
3.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 또는 토론회(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방식을 포함한다)의 개최 및 운영
4. 사례연구 등 정책 입안 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출장 또는 연수

5.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역량개발 강화교육

6. 그 밖에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28조(포상) 의장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지원과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선행 등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에 개인, 공무원, 기관·단체 등에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공인) 의회는 의회에 공인을 비치·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 후보 자 등 록 신 청 서 (제19조 관련)

주 소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주택) (핸드폰)		
등록신청 직위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후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사무국장 귀하

□ 「지방자치법(법률)」(2024.1.9. 타법개정, 2024.5.17. 시행)

제26조(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사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집행기관의 조직, 재무 등 지방자치에 관한 정보(이하 “지방자치정보”라 한다)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주민의 지방자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된 지방자치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주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37조(의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둔다.

제38조(지방의회의원의 선거) 지방의회의원은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선출한다.

제39조(의원의 임기)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상해·사망 등의 보상) ① 지방의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3조(겸직 등 금지) ⑥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의장은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1. 제5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⑦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4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5조(의원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 수사기관의 장은 체포되거나 구금된 지방의회의원이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각급 법원장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공소(公訴)가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해당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46조(지방의회의 의무 등)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지방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한다)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2조(의회규칙)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사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사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사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사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7조(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시·도의 경우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으로 선출하는 의장·부의장 선거는 최초집회일에 실시한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8조(의장의 직무) 지방의회의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제59조(의장 직무대리) 지방의회의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60조(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제61조(보궐선거) ①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闕位)된 경우에는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②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이나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3조(의장 등을 선거할 때의 의장 직무 대행) 제57조제1항, 제60조 또는 제61

조제1항에 따른 선거(이하 이 조에서 “의장등의 선거”라 한다)를 실시할 때 의장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없으면 출석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의장등의 선거를 실시할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지방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89조(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지방의회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

제90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방의회의원의 직에서 퇴직한다.

1. 제4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제9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지방의회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92조(자격상실 의결) ① 제91조제1항의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자

격상실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은 제1항에 따라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사무처 등의 설치) ① 시·도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처를 둘 수 있으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직원을 둔다.

② 시·군 및 자치구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이나 사무과를 둘 수 있으며, 사무국·사무과에는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 및 직원(이하 제103조, 제104조 및 제118조에서 “사무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104조(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 ① 사무처장·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사무직원의 임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 등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지방공무원법」을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2024.12.31. 일부개정, 2025.1.1. 시행)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7조(지방의회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그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속으로 지방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보상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 부시장이나 부지사(부지사 또는 부시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부지사 또는 부시장으로 한다)로, 시·군·자치구의 경우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

⑤ 법 제42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에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⑥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60조(의원의 사직) ① 지방의회의원은 사직하려면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61조(의원의 자격심사) ①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심사 청구를 받은 의장은 그 청구서의 복사본을 심사 대상인 지방의회의원(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에게 송달하고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심사대상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청구서만으로 해당 지방의회의원의 자격을 심사할 수 있다.

③ 지방의회는 필요한 경우 자격심사를 청구한 지방의회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질문할 수 있다.

④ 심사대상의원은 다른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